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내용	-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간행물 발간, 포럼 운영 - 지방 세무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소통 협력 등 지원 사업
산출기초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29.473.880천원의 1만분의 1.0
출연금	22,947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및 동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전년도 보통지방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강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비의 출연은 의무 사항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정 출연율은 현행법상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로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원 혁신 방안 후속 조치로 1.2에서 1.0으로 출연 비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 예고(2025.11.5.~2025.12.15.) 후 2026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세제과에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으로 예산 편성할 것을 공문 통보(출처: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통보”/ 서울특별시 세제과-10977호(2025.7.9.))하였으며
-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집계표(출처: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서울특별시 세제과-13759호(2025.8.25.))”를 살펴보면 타 지자체의 출연 비율도 1만분의 1.0으로 산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이 사항은 없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648호

제출연월일: 2025. 11.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2,947천원**을 출연하고자 함.

가. 출연대상: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다. 사업내용

-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역 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간행물 발간, 포럼 운영
- 지방 세무공무원 교육, 자치단체 소통 협력 등 지원 사업

라. 출연 필요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함.
-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원활하게 지원 받아 지방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 제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마. 출연금액(소요예산)

- 범　　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 출연금액: 22,947천원
- 산출기초: 202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29,473,880천원의 1만분의 1.0

3.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참 고 사 항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출연비율(1.2->1.0) 하반기 시행령 개정 예정〕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